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08-0200213	홈페이지 www.bada7123.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9.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20.	대표이메일 danuri33@naver.com
[바다쭈꾸미] 정 보 공 개 서 대신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대 싨 푸 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04,1층(소사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66-7123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2-341-060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66-7123

목 차

-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대신푸드	바다쭈꾸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04, 1층(소사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3.01.02	나숙윤	1566-7123	032-341-0606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302-07-6429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대신푸드	바다쭈꾸미	2023.01.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04	최승경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바다쭈꾸미	-
상 호	바다쭈꾸미 점	-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401364934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99,315	-	-
2024년	-	-	-	90,447	-	-

별첨1:2023년~2024년 부가세신고서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부가세신고서로 대체하며, 그에 따라 매출액만을 표시합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은 경영하고 있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나숙윤	대표	2023.01~현재	대표	가맹사업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바다쭈꾸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사용기간)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18.06.04	4013649340000	최형진	2028.06.04 (2028.06.04)

- ▶ 당사는 상표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표 소유자로부터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바다쭈꾸미]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8 년 9 월 30 일

2. [바다쭈꾸미]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신포드	다누리	최승경	2008.09.30. ~ 2018.0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04
대신포드	바다쭈꾸미	최승경	2018.04~2022.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04
대신포드	바다쭈꾸미	나숙윤	2023.01~현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04,1층(소사동)

3. [바다쭈꾸미] 업종

영업표지	업종	
바다쭈꾸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쭈꾸미볶음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2	-	1	1	-	1	1	-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23년1월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	0	0	0	0	2
2023	2	0	0	1	0	1
2024	1	0	0	0	0	1

* 당사는 23년 1월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6. [바다꾸꾸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바다꾸꾸미] 외에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부가세신고서 매출을 기준으로 1곳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	230,975	10,314	230,975	10,314	230,975	10,314	-
서울	1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부산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대구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인천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광주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대전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울산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세종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경기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강원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충북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충남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전북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전남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경북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경남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제주	-	해당 없음	-	-	-	-	-	5곳미만

* 매출액은 가맹점당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바다쭈꾸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다쭈꾸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곳	2,54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나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바다쭈꾸미]의 광고/판촉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예치기관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 증권을 확인 후 가맹금을 당사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바다쭈꾸미]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장크기 99㎡ 기준 [69,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가맹사업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0 조의 규정에 따름	가맹점모집 및 가맹계약 을 위한 실질경비로 지출 됨	가맹계약서 9조 참 고
교육비	2,200		교육시작이전	교육후 비용으로 소모된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체결과 동시	물품·자재의 대금, 광고·관촉비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등	가맹계약서 7 조참고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가입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의 액수는 [10,700천원/부가세포함]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39,600	1,320	계약시40%, 계약10일이후40%, 집기도착시20%	매장크기99㎡ 기준 간판 종류에 따라 가격 상이
주방집기	협력업체	16,500	-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4,400	-		
초도물류	본사 협력업체	2,200	-	물품 도착 즉시	식자재는 별도
POS	협력업체	1,650	-	물품 설치 즉시	-
총계		64,35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를 점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3.3㎡당 일십만 원(₩100,000/부가세 별도)의 감리비를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는 신규 가맹점의 입지 선정에 있어 가맹희망자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본사에 의뢰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채용기준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의 분할 납부

당사는 가맹금의 분할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협력업체)	가맹본부 20%, 가맹점사업자가 80%를 안분함.	별도 공지	광고 후 반환불가능	지출된 광고비	전국규모 단위의 광고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지역 협력업체자 율지정	협의하여 결정	별도공지	반환안됨	변경비용 으로 소요	-
점포환경 개선비용	-	-	-	-	-	가맹점사업자 자율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금의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안됨	-	-
보수교육 연수교육	가맹본부	실비	별도공지	반환안됨	교육비용 으로소요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유효기간의 준수여부, 지정된 상품의 사용여부, 재고의 관리상태 등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032-345-0606)
서비스 관리	접객 서비스, 청소 상태, 유니폼 착용 상태, 기타 운영 상태	월 1회	문의: 관리팀 (032-345-0606)
제품 관리	레시피 준수여부, 식자재 준수 여부, 가격 준수 여부	월 1회	문의: 관리팀 (032-345-0606)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관리팀 (032-345-0606)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비소멸성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바다쭈꾸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바다쭈꾸미 본사]에 교육비 [2,000]천원(부가세 별도)과 계약이행보증금 [3,000]천원(부가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17,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다쭈꾸미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되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1일당 일금 일십만원, 부가세없음)을 손해배상액으로 바다쭈꾸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바다쭈꾸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바다쭈꾸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바다쭈꾸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2) 당사가 [바다쭈꾸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부대찌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구두경고 2회 위반: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계약해지	
쭈꾸미 비빔밥			
낙지 비빔밥			
철판 쭈꾸미볶음			
숯불향 쭈꾸미볶음			
숯불향 낙지볶음			
쭈꾸미만두			
고기만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가격통보방법	비고※
부대찌개	8.000	서면공지	부대찌개 쭈꾸미 비빔밥 낙지 비빔밥 공기밥포함 그 외메뉴 공기밥별도
쭈꾸미 비빔밥	9.000		
낙지 비빔밥	11.000		
철판 쭈꾸미볶음	12.000		
숯불향 쭈꾸미볶음	12.000		
숯불향 낙지볶음	15.000		
쭈꾸미만두	6.000		
고기만두	6.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쭈꾸미 요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바다쭈꾸미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바다쭈꾸미]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바다쭈꾸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바다쭈꾸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재계약기간도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건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조 2항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바다쭈꾸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2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한 경우 1) 귀하에게 물품공급의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사와 약정한 물품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3)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 및 원자재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4) 당사가 정한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5)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조 1항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한 즉시해지 사유 발생시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2조 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또한, 위 표에 기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수정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브랜드 변경 2. 업무관리규정의 변경 3. 1차 가맹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4. 영업지역의 변경	제37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서면으로 통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하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승인청구 받은 후 1개월 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계약 체결(5일 소요) → 교육비등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귀하가 운영하는 바다쭈꾸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2개월 전에 승인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교육비 일금 이백이십만원(₩2,200,000/부가세 없음),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삼백만원(₩3,000,000/부가세 없음)은 부담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에 한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정상속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통보	-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대리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통보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꾸꾸미를 주메뉴로 하는 외식업종 및 동종 프랜차이즈업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바다꾸꾸미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일수는 주 5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음식만들기 숙련도 및 정확도점검	담당자 매장 방문→숙련도 및 정확도 확인→ 교정→질의응답→완료	분기1회	관리팀	
매장운영 전반	청결상태확인→매장운영애로사항 점검→제품보관상태점검→매장운영상태 점검→교정→완료	분기1회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바다쭈꾸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신문, TV 라디오)	상품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모집광고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20%	80% 전체가맹점이 균분함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신문, TV 또는 라디오 광고에 한함
	순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주 부담			사전에 그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 가맹본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시행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한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는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 ② 귀하가 기타 제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귀하는 영업개시일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5	-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선정 검토 - 희망지역 입지 정보 제공	D-42	-
최종협의	- 희망지역 점포 결정 및 임대차 계약	D-41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D-29	-
가맹금 입금	-가맹금 당사 입금(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므로 가맹 금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D-29	-
점포실측	- 공사 및 시공비용 산출	D-29	-
실내외공사	- 공사 및 인허가	D-28-3(25일)	-
교육 실시	- 개점시 교육(조리 및 운영) 실시	D-5-오픈후2일 까지(8일)	-
개점준비마무리	- 식자재 및 개점준비 마무리	D-2	-
개점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일	D-day	-

*소요비용과 소요기간은 매장크기 99㎡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1).인테리어 공사시 매장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인허가에 관련하여(소방법, 용도변경 등) 개설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3).점주의 교육이수 상태에 따라서 개설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납부후 당사에서 가입한 피해보상보험가입에 관한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 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바다쭈꾸미]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바다쭈꾸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교육장소
신규교육	*손님맞이 기본예절 및 방법	1:1	1-5일차	지정매장
	*손님응대 방법			
	*주방요리보조 및 실습	1:1		
	*쭈꾸미 손질방법	1:1		
	*부대찌개 재료 손질방법	1:1		
	*2,3일차 교육반복	1:1		
	*매장오픈관련 준비 실습 *홀써빙, 주방교육, 점포관리등 총정리	1:1	오픈전일 및 이후2일간(3일)	
보수교육	신메뉴출시등	본사인원파견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바다쭈꾸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교육	64시간(8일 8시간기준)	[2,200]	부가세 포함
보수교육	협의	없음	-
연수교육	필요시	별도산정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교육, 훈련 불참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전 신규교육은 이수해야만 원활한 가맹점 경영에 도움이 되오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개업시 교육, 훈련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을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다쭈꾸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4년도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 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바다쭈꾸미"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20 년 월 일

2.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 프로그램

3.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4.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인	수령자:	인
-------	---	------	---